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8,178,489	15,845,355
일반회계	489,880,319	14,696,410
특별회계	38,298,170	1,148,945
공기업특별회계	7,070,748	212,122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7,070,748	212,122
기타특별회계	31,227,422	936,82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89,260	44,678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59,232	43,77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76,164	29,28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22,899	24,687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2,285,889	368,577
수질개선 특별회계	7,593,357	227,801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462,52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